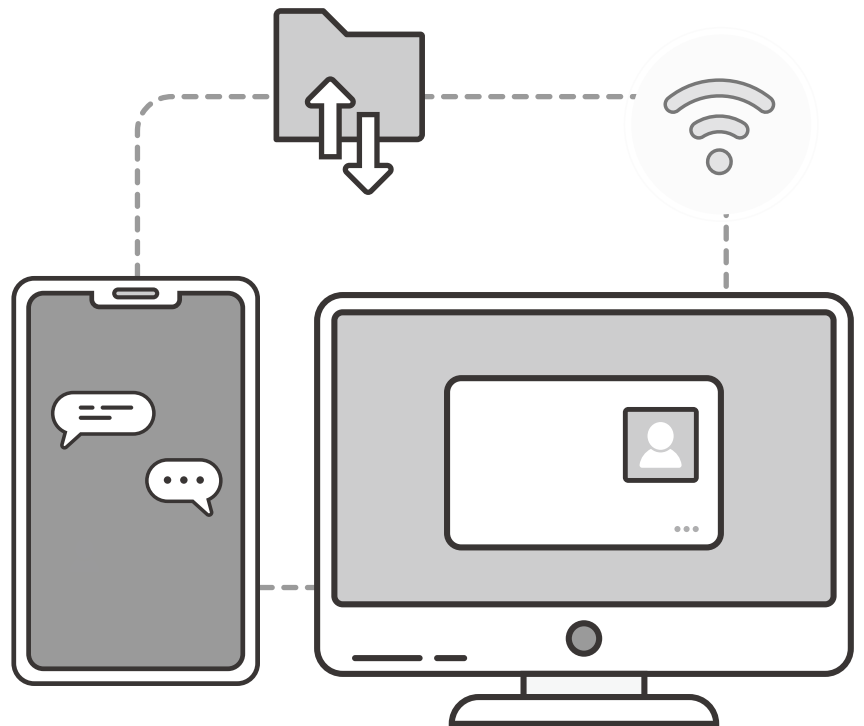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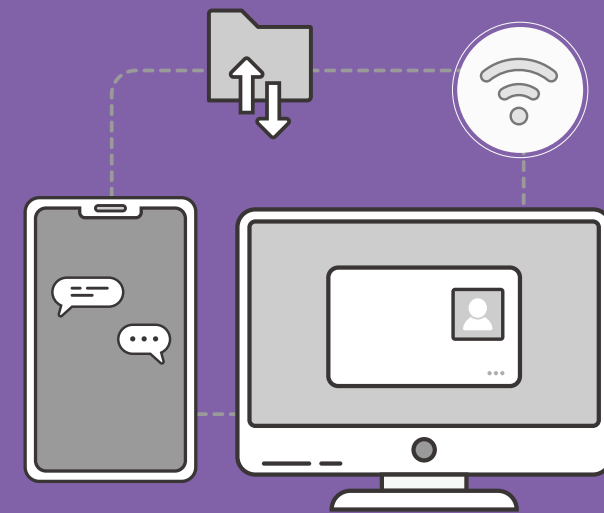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당 안내서에서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 등은 엄격한 법률적 정의가 아닌, 올바른 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통칭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일상에서 가해자의 시선 혹은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관련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목차

I.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3
1. 디지털성범죄 개념	4
2. 디지털성범죄 유형	5
II. 디지털성범죄 대응하기	6
1.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	7
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안내	8
3. 수사기관 연계 지원 안내	14
III.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16
1. 불법 촬영	17
2. 유포 및 재유포	19
3. 유포 협박 및 강요	21
4. 유포 불안	23
5. 불법 합성	24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26
7. 온라인 그루밍	28
8. 몸캠피싱	31
9.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3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1. 디지털성범죄 개념
2. 디지털성범죄 유형

1

디지털성범죄 개념

💬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 또는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 행위로서

- 촬영물(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 촬영물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이자 인격살인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제약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통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 및 유포가 되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완벽한 피해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 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공공장소 침입, 데이트폭력 등 오프라인 성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 집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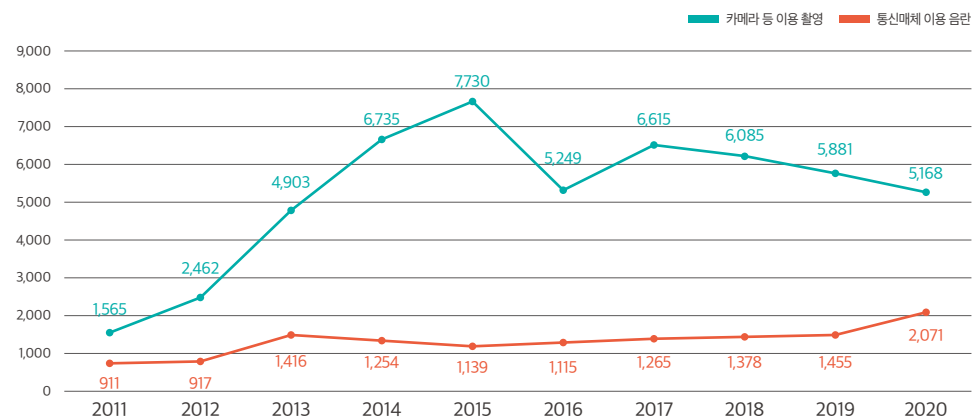


그림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발생추이(2011~2020년)
출처 : 대검찰청(2021),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

디지털성범죄 유형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 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p>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p> <p>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비동의 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 	<p>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p> <p>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p>
유포 협박 및 강요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성관계 등 강요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p> <p>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p>
불법 합성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표현물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 의미를 담아 재가공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p> <p>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p>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 내 성희롱 ·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p>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p> <p>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5</p> <p>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p> <p>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p>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관계를 형성하여 성적 촬영물 및 성관계 요구 · 동성인 척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촬영물 요구 	<p>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p> <p>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p> <p>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p> <p>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5 제71조(벌칙) ① 2,3</p>



디지털성범죄 대응하기

1.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안내
3. 수사기관 연계 지원 안내

1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

피해 당사자

- ▶ 피해사실에 대해 절대 자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사전 예방도 어려운 데다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도록 합니다.
- ▶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모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혼자 해결해나가기 어려울 경우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 혹은 여러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해당 피해영상물 원본(사진·영상),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영상물을 삭제한 경우 피해 지원(삭제 및 모니터링)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 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및 조력자

- ▶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주변인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와 상의 후 의사에 따라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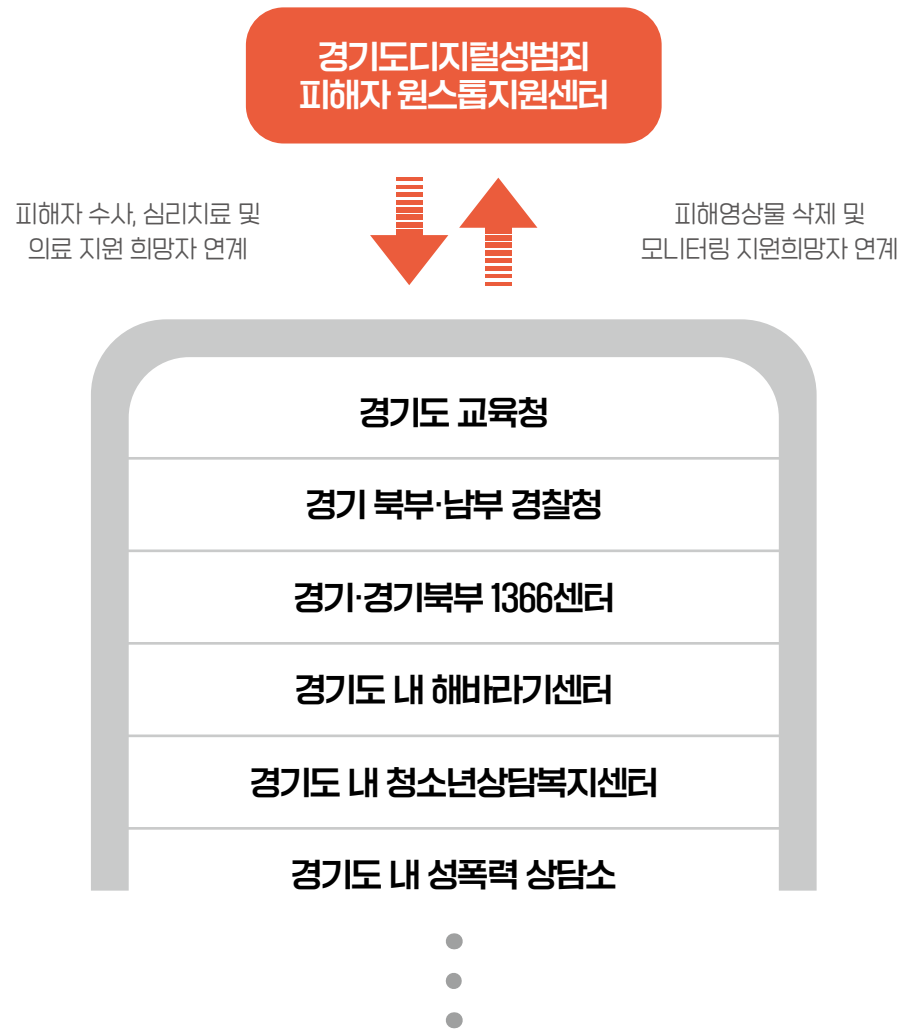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안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기관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법률 지원, 수사연계,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연계를 제공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1. 2. 1)
- 경기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21. 6. 14.)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21. 7. 9)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지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용

경기도 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피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탐색함. • 내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함. • 피해 지원을 위한 서류를 안내하고 발송함. • 사안 처리의 진행을 위한 신분증 대조 및 서류 접수를 확인함. • 내담자의 사안에 따라 맞춤형 피해자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를 제공함. • 기관 연계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 지원을 제공함. • 센터에 관한 문의 사항 안내하고 처리함.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영상물을 검색하여 유포 범위 및 현황을 파악함. • 해당 플랫폼에 유포 정황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함. • 내담자의 요청 시 수사 연계를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함. • 삭제 지원 현황 안내를 위해 내담자에게 초기 3개월간 매달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를 발송하며 이후 연간 결과보고서(1년 단위), 최종 결과보고서(3년)를 발송함. •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추후 연장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의 중단이 가능함.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디지털성범죄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함. • 필요시 변호사 선정을 통하여 법률 지원을 함.
안심지지 동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에 방문하거나 수사기관에 내방하여 조사(진술 등)를 진행하는 경우,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상담사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 • 내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안정감 제공과 피해사실 호소에 노력함.
수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함.
심리치료 및 의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유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기도 소재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기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 및 의료 연계를 지원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어떻게 지원받나요?

● 신청 방법




피해 접수

☎ 1544-9112
✉ 031cut@gwff.kr
TALK 031cut (09:00~18:00)



상담 후 신청 서류 접수

- 피해 상황 파악
- 구비 서류 및 삭제 지원 자료 (원본 영상/사진, URL 등) 제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법률 지원 및 수사 연계
-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연계
- 안심지지 동반자

● 구비 서류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안내 및 동의서	대리 삭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당사자	○	○	○	○	X	X
대리인	○	○	○	X	○	○

- ▶ 센터 내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 기본 피해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연장 시 구비 서류 재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연계 사안인 경우 수사관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시·군을 제외한 주소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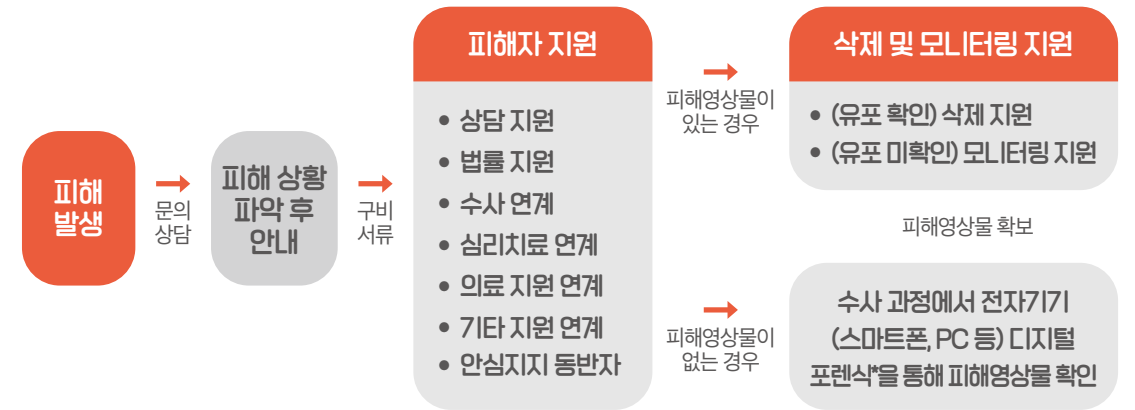
신분증 제출 안내

주민등록증
홍길동(洪吉童)
980808-2 [주민등록사적(가림처리)]
경기도 수원시 [세부주소(가림처리)]
수원시 장안구청장

자동차운전면허증
홍길동(洪吉童)
980808-2 [주민등록사적(가림처리)]
경기도 수원시 [세부주소(가림처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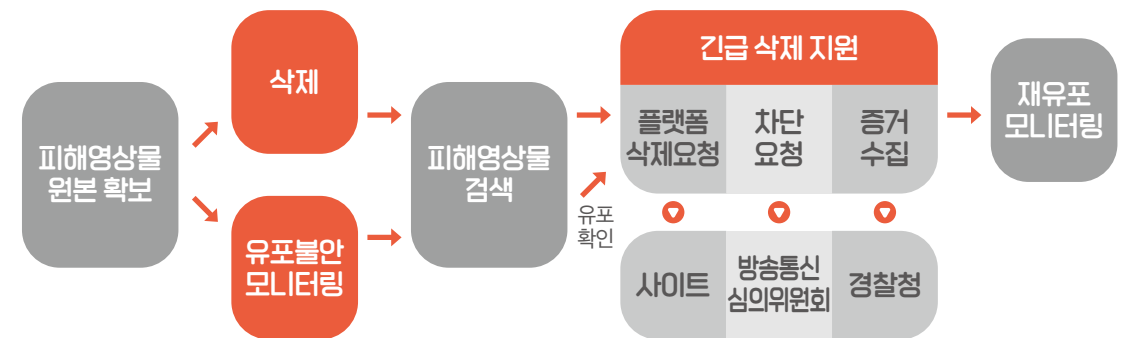
1. 유효한 정보 외에는 반드시 가림처리 부탁드립니다.
2. 주민·신분증, 운전면허증
3. 미성년자: 학생증, 청소년증 등

● 피해자 지원 과정



*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로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고소 및 진정)가 된 후 수사진행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진행함.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과정



- ▶ 삭제 지원은 피해영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유포불안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 삭제 지원 시 수사 연계를 위해 증거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 따라 삭제 요청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삭제 지원 초기 3개월간 매달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결과보고서(1년 단위), 최종 결과보고서(3년)가 발송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자주 찾는 질문

Q. 경기도민만 피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 경기도 내 재학, 재직, 거주자는 피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피해 지원은 무료이며, 구비 서류 작성시 선행된 후 진행됩니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관련 상담 지원만 가능한가요?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위기 상담 및 피해 접수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담과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진행 가능한 상담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Q. 피해 신고(수사 연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 및 담당 부서 안내가 가능하며, 신고 시 안심지지 동반 지원으로 담당 상담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Q. 피해영상물의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후에도 재유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 제가 학생인데 부모님(법적 대리인) 모르게 삭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도 본인 이름으로 단독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고지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서 말하는 피해영상물 원본이 무엇인가요?

↳ 피해영상물 원본인 영상/사진, 사이트 내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구체적인 주소(URL)를 의미합니다. 원본 피해영상물이 없는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어렵습니다.

Q. 센터에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알 수 있나요?

↳ 삭제 지원 초기 3개월간 매달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 연간 결과보고서(1년 단위), 최종 결과보고서(3년)가 발송됩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삭제 및 모니터링의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여부 안내 메일을 발송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초기와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삭제 지원 종단을 원하면 지원 기간이 남아있어도 종단이 가능합니다.

3

수사기관 연계 지원 안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경기북부·남부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기능
촬영 관련 (유포 전)	불법(비동의) 촬영	여성청소년수사
	불법(비동의) 촬영물 또는 유포 협박	
유포 관련 (유포 후)	동의 촬영물 유포 협박	사이버수사
기타	불법(비동의)·동의 촬영물 유포	사이버수사
	몸캠피싱	

※ 사건 접수 기준 피해 내용 범죄 유형의 경합 내지 세부 유형에 따라 주무기능이 조정됩니다.

※ 유포 협박 사건 접수 시 기존에 수사 중인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는 경우 '형사'에서 병합 처리됩니다.

피해자(보호자 포함)가 경찰서(민원실 또는 수사팀)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 평일 주간

기본 사무분장에 따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 야간·공휴일

주·야간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는 기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이버수사 기능에 해당하는 사건은 익일 기존 사이버수사팀으로 인계합니다.

▶ 참고사항

범죄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사건이 이송되기도 합니다.

경찰관서에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

※ 신고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일 이내 처리 예정)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 시 진행되는 피해자 보호 내용

구분	내용
동성수사관 전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 수사관도 조사가 가능함.
신뢰관계인 ¹⁾ 동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함. 특히 13세 미만 또는 정신장애, 심신미약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함.
피해자 국선번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인 참여하에 조사가 가능하며 무료 국선번호인 선임을 지원함.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함.
가명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하여 사건 서류 작성이 가능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진행에 따라 구두, 전화, SMS 등 사건 접수 시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송치, 이송, 종결 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²⁾를 요청할 수 있음.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 뒤 사건 수사와 병행하고 사건 담당자 및 피해자보호 담당(여성청소년과 소속, 청문 소속) 경찰관이 협력함. 사안에 따라 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심터를 제공하며 가해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이전·생계·치료비 지원과 법률지원 등을 추진함.

1) 신뢰관계인: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2) 신변 보호 조치: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 및 수사기관에 긴급 SOS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1. 불법 촬영
2. 유포 및 재유포
3. 유포 협박 및 강요
4. 유포 불안
5. 불법 합성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7. 온라인 그루밍
8. 몸캠피싱
9.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불법 촬영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카페 화장실에서 휴지통ちに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연인의 핸드폰에서 제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어요."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찍혀서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불법 촬영 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촬영기기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특히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영상을 확보하여 주세요. 피해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제목, 키워드 등을 확보하여 추가 피해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 피해영상이 확보되어야 피해 지원 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 ▶ 피해영상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해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거(피해영상물)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³⁾을 받고 싶다면 확인해 주세요

- ▶ 가해자의 촬영기기를 확보하였을 때, 피해영상물이 지워졌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피해영상물)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과정 중 가해자의 클라우드 등을 연동하여 피해영상물 저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만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 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한다면, 피해영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물 원본 또는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URL이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2 유포 및 재유포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한테만 보낸 신체 사진을 SNS에서 발견했어요.”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된 걸 발견했어요.”
 “전 연인과 주고받은 성적 영상을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퍼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 지원 기관에서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피해 당사자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온전히 가해자의 잘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온라인에 영상물이 유포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유포된 URL, 원본 영상·사진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또한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연락하여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개인 간 대화나 메일을 통해 영상물이 유포된 것을 인지한 경우 피해영상물,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피해 지원 기관의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영상물 원본 또는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URL이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영상물이 피해 당사자에게 없더라도 유포된 URL만으로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포 협박 및 강요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SNS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제 사진을 친구(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성적 대화와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유포 협박 및 강요의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확보한 영상물(복제물 포함)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유포 불안 등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연락 단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추가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으나 협박에 대한 증거(피해영상물, 문자 및 대화 캡처본,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협박이 진행되고 있다면 유포 피해 및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타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포 협박만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 중 유포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법률 지원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3조(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유포 불안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 변형된 모형의 불법 카메라가 많다는데, 혹시 저도 촬영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 유포 불안 피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유포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피해 지원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①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 및 강요를 받고 있거나
 - ② 촬영한 경험이 있거나
 - ③ 촬영물을 송신한 경험이 있는지
- ▶ 유포 불안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유포 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한 대화 내역, 접속한 링크, 설치한 파일 등 다양한 요소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피해영상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안에 따라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 중 유포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5

불법 합성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에 타인의 신체 부위를 합성하여 다른 SNS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어요."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에 제 얼굴이 합성되어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어요."

▶ 불법 합성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다른 형태로 가공 및 유포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피해 유형입니다.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괴롭힘 도구로 사용되며 개인신상정보(이름, 주소, 나이, 핸드폰 번호 등)와 허위 사실, 성적 모욕성 글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 합성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등을 확보하고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 피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피해영상물과 개인신상정보가 함께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피해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피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합성물이나 그 원본이 확보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키워드, 개인 정보, 별명 등의 정보가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유저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어요.”
“동아리 단체방에 친구(지인)가 자신의 성기 사진(혹은 성적 표현물)을 올렸어요.”
“제 사진이 도용되어 성적 모욕성 글과 함께 SNS에 게시된 걸 발견했어요.”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다양한 피해(모욕, 명예훼손 등)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초기 상담을 통해 충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구체적으로 어느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인지, 영상물과 동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성적 모욕성 글이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 혹은 비공개 채팅방에서 영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먼저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다면 신고를 한 뒤 필요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플랫폼에 추가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텍스트 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사안에 따라 맞춤형 피해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영상물과 함께 성적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영상물을 확보하여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키워드, 개인 정보, 별명 등의 정보가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①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언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10.21. 시행 예정)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그루밍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을 하며 얼굴 사진을 주고받은 후 속옷 사진이나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 사항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범죄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피해자 및 주변 인물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영상물(사진,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피해자나 보호자가 심리적 불편감에 대화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가 없어져 수사를 통한 피해 구제 및 피해 지원 기관에서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피해영상물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 정황 증거로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가 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나 데이터의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에 연계하여 상담 및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변 보호자가 알아챌 때까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정서 변화, 행동 변화 등)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성교육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8

몸캠피싱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설치한 후 화상 채팅을 했어요. 며칠 후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며 제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다고 해요. 금전을 요구하며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죠?”

➔ 몸캠피싱은 범죄조직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노출 및 행위를 요구하며 이를 녹화하고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수법이 다양화된 만큼 피해 연령도 다양해지고, 피해자 다수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수사기관에서 범죄 증거, 범인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염 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초기화를 보류한 후 임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원격 삭제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관련 사진, 메시지 등 스마트폰 내 정보를 추가로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후 보관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해킹 프로그램 삭제 시도만으로도 대화나 캡처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백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피해 경위, 사용된 채팅 등 사이트 또는 어플, 메신저 종류
- 공격자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 주소(URL), 파일 명칭(****.apk) 등
- 구체적 협박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
- 송금 시: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송금 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
- 동영상 유포 여부(유포 시 유포시점,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 유포된 동영상 원본 또는 캡처 자료
- 채팅 내용(대화 기록)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보관하여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지원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기타 피해 지원(전문 심리 치료 및 의료 연계)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 중 유포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법률 지원	• 사례에 따라 전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연계	• 사례에 따라 수사 연계를 희망할 경우 고소 및 진정에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가해자의 요구(금전, 재회, 영상 촬영 등)에 응해주면 피해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 ➔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도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니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 ➔ 피해 증거(대화 내용, 계좌번호, 계정 ID 등)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피해 촬영물을 확보하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몸캠피싱 피해의 경우 지인들에게 해킹 사실을 알려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Q.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영상·사진을 보냈는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부모님 모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피해영상물을 확보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단독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고지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Q.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가해자를 만나면 피해영상물을 지워줄까요?

- ➔ 가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또 다른 피해(성폭력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신고를 권합니다.
- ➔ 위와 동시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Q. 대화방(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에서 제 영상·사진을 주고받고 성적 모욕성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대화방(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에서의 영상·사진 유포는 피해 지원 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상 유포 여부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해당 피해영상물 원본 등으로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도서관 3층
홈페이지 <https://gwff.kr/031cut>
등록번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021-003
디자인 디자인세창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있으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허가 없이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상담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법률지원



수사/의료
연계



안심동반자
프로그램



카카오톡 바로상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